

제 10편 산업안전

제 33장 통칙

제 209조. 기본 개념

산업안전 -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체계로서, 법적, 사회-경제적, 조직-기술적, 위생-보건적, 치료-예방적, 재활적 및 기타의 활동을 포함한다.

작업환경 -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환경과 근로 절차의 요소들의 총합

업무상 유해요인 -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상 요인

업무상 위험요인 -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상 요인

안전한 작업환경 -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규정된 기준을 넘지 않는 작업환경

작업장 - 근로자가 일과 관련하여 반드시 위치하거나 머물러야 하는 장소로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놓인 장소

근로자의 개인 및 집단보호 장비 -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수단과 오염방지를 위한 수단

산업안전 관리체계 - 구체적 사업주의 산업안전 시책과 목표 및 그 목표 달성 절차를 규정하는, 상호 연관되고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의 총체.

산업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기본 규정은 노동 분야 정부시책 수립 및 법적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행정기관이 러시아 사회-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노사정 3자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정한다.

생산 활동 - 작업 수단을 이용해 자원을 준비된 상품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근로자 활동의 총체로서, 생산, 각종 원료의 처리, 건설, 다양한 형태의 용역 제공 등이 포함된다.

산업안전 규제 - 산업안전에 관한 법과 지침으로 규정한 근로안전 기준과 산업안전

규제 등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범적 요구

작업환경 정부진단 - 진단 대상의 정부 산업안전 규제 준용 평가

12번 째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실효 - 연방법 제 421-FZ호. 2013.12.28.

근로안전 기준 -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산업안전 분야에
서 사회-경제적, 조직적, 위생-보건적, 치료-예방적, 재활적 조치의 조정된 이행을 위
한 규칙, 절차, 기준, 규범

직업 위험 - 근로자가 근로계약 및 이 법과 다른 연방법에서 정한 경우에 따라 근
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영향이 미친 결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

직업 위험의 평가절차는 러시아 사회-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노사정 3자위원회의 의
견을 고려해 노동 분야 정부시책 수립 및 법적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행정기관
이 정한다.

직업 위험 관리 - 산업안전 관리의 요소로서, 직업 위험의 발견, 평가 및 감소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상호 연관된 활동들의 총체

제 210조. 산업안전 분야 정부시책의 기본방향

산업안전 분야 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보존의 우선권 보장
- 산업안전 분야의 러시아 연방법 및 기타 법규명령, 러시아 연방주체의 법 및 기타
법규명령, 그리고 연방 차원의, 부처 차원의, 지역 차원의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
선계획 등의 채택 및 시행
- 산업안전 정부관리
- 산업안전 정부규제 준용에 대한 감시 등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
령 준수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시
- 작업환경 정부진단

- 작업환경 특별평가 수행절차 규정 및 작업환경 특별평가 수행의 질 진단
- 산업안전 분야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법적이익 준수에 대한 사회적 감독 지원
- 근로자의 재해와 건강장해 예방
-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의 조사와 집계
-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근로자 강제사회보험에 근거하여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법적 이익 보호
-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업무에 대한 보증 및 보상의 규정
- 산업안전, 환경보존, 그리고 기타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 분야에서의 활동 조정
-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국내외 선진 경험 보급
- 산업안전 활동 재정에 정부 참여
-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 및 그들의 전문 보수교육
- 작업환경, 업무상 부상 및 질병, 그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한 정부 통계 작성 관장
- 산업안전 통합정보체계 기능화
-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안전한 기계 및 장비의 제작과 도입, 근로자 개인 및 집단 보호 장비 생산 등을 촉진하는 효과적 조세정책 시행
-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근로자에게 개인 및 집단 보호 장비, 위생-생활공간 및 시설, 치료 및 예방 수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의 규정

산업안전 분야에서 정부시책 기본방향의 추진은 러시아 연방의 공공 기관, 러시아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그리고 노동조합과 그들의 단체 및 기타 산업안전 관련 근로자가 위임한 대표기관 등의 합의된 활동에 의해 보장된다.

제 211조. 정부의 산업안전 규제

러시아 연방법과 기타 법규명령, 연방주체의 법과 기타 법규명령 등에 포함된 산업 안전에 대한 정부 규제를 근거로,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규칙, 절차, 기준, 규범 등을 규정한다.

정부의 산업안전 규제는 개인이나 법인이 시설을 설계, 건축(보수), 운용하거나, 기계와 기계장치 및 기타 설비의 설계, 공정 설계, 생산 및 노동의 조직 등과 같은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있어 의무사항이 된다.

근로안전 기준 등 정부 산업안전 규제를 포함하는 법의 하위법령의 작성, 승인 및 개정 절차는 노사정 3자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러시아연방 행정부가 수립한다.

제 212조. 산업안전과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과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주어진다.

사업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운용과 기술공정의 구현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을 위한 도구, 원료 및 물질 등의 안전을 보장
-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및 기능화
- 필수 인증이나 기술 관리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보증을 통과한 근로자 개인 및 집단 보호 장비 채택
- 모든 작업장에 산업안전 규제에 순응하는 작업환경
-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 등에 의거한 근로자 업무 및 휴게체제
-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거나 특수 온도 및 오염과 연계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필수 인증이나 기술 관리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보증을 통과한 특수 의복, 특수 신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세척 및 중화 장비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확보 및 지급
- 작업수행의 안전한 방법과 요령, 작업장에서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 산업안전에 대한 설명, 작업장에서의 실습 및 산업안전 규제에 관한 지식 검증

- 규정된 절차에 따른 교육, 산업안전에 대한 설명, 현장 실습 및 산업안전 규제 지식 검증 등을 거치지 않은 자의 근로 금지

- 작업장의 작업환경과 근로자들의 개인 및 집단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감독체제 구축

- 작업환경 특별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업환경 특별평가 수행

-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에 정한 경우, 필수 배치 전(채용 시) 및 정기(근로활동 중) 건강진단, 기타 필수 건강진단, 근로자 필수 정신과 검진, 임시 건강진단, 의료소견이 있고 근로자 자신이 희망할 경우의 필수 정신과 검진 등을 근로자가 직장(직책)과 평균임금을 유지하면서 수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추진

- 필수 건강진단과 필수 정신과 검진을 수검하지 않았거나 부정적 의료소견이 있는 경우, 동 근로자의 근로 의무 이행 접근 차단

- 작업장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건강장해 위험, 그들에게 주어진 보증 및 제의되는 보상, 개인 보호 장비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

- 노동 분야의 정부시책 수립 및 법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행정기관,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 준수에 대한 연방정부 감시 이행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 기타 담당 분야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 각 연방 주체의 산업안전 분야 기관,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 이행에 대한 노동조합 감독기구 등에, 그 기관들이 행정권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 제공

- 사고 상황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희생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조치

- 이 법과 다른 연방법 및 기타 러시아연방 법규명령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의 조사와 집계

- 산업안전 규제에 순응하는 근로자 위생·생활시설 지원과 의료 보장, 긴급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서 발병한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
-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연방 행정기관 담당자, 담당 분야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 연방주체의 산업안전 분야 행정기관,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기관 및 사회감독 기관 등의 대표자가 산업안전과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업무상의 재해와 질병을 조사할 목적으로 제재 받지 않고 방문하도록 보장
-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의 준수를 감시하도록 위임된 연방 행정기관과 담당 분야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다른 연방 행정기관 등의 책임자의 시정지시서를 이행하고, 사회적 감시기구의 제안을 이 법과 다른 연방법에서 정한 기한 내 검토
-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근로자 강제사회보험
-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근로자 교육
- 이 법 제 372조에 정한 자체 규정 채택 절차에 따라, 단위 노동조합의 선임기구나 근로자 위임기구 등의 의견을 고려해 산업안전 규칙 및 지침의 작성과 확인
- 자신의 활동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 규제를 포함한 법령집 비치

제 213조. 일부 범주 근로자의 건강진단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지하작업 포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교통수단 운용과 관련해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작업수행의 적합성 판단과 업무상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필수 배치전(채용 시) 및 정기(21세 이하인 자 - 매년) 건강진단을 받는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는다.

식품산업, 외식산업과 유통, 상수도, 의료기관, 어린이집 및 기타 일부 사업주들의 근로자들은 주민의 건강 보호와 질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정된 건강진단을 받는다.

특정 범주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과 러시아연방의 다른 연방법 및 기타 법규명령들에 의거, 근무(교대)일의 시작, 근무 중 및 근무(교대)일 종료 시에 필수 건강진

단을 받게 할 수 있다.

동 건강진단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생산요소들과 필수 배치 전 및 정기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업무, 그리고 그 진단절차 등은 연방 행정부가 위임한 행정기관이 정한다.

특정 사업주는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결정에 따라 추가 조건과 필수 건강진단 이행 안내서를 도입할 수 있다.

고위험의 원천(유해물질 및 해로운 요인의 영향)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나, 고위험 환경의 근로자들은 러시아연방 행정부가 위임한 행정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5년에 1회 이상 필수 정신과 검진을 받는다.

이 조에 규정한 건강진단과 정신과 검진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 214조. 산업안전 분야에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산업안전 규제 준수
- 개인 및 집단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
- 업무 수행의 안전한 방법과 요령, 작업장에서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산업안전에 대한 설명, 작업장에서의 실습 및 산업안전 규제에 관한 지식 검증 등의 교육훈련 이수
-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재해 또는 업무상 급성 질병(중독) 증상 출현 등 자신의 건강악화 상황을 직속 또는 상위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 필수 배치 전(채용 시) 및 정기(근무 중) 건강진단과 기타 필수 건강진단 수검, 또한 이 법과 기타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임시 건강진단 수검

제 215조. 생산시설과 상품의 정부 산업안전 규제 순응

생산시설, 기계, 장비 및 다른 생산설비 등의 건축 및 보수와 기술공정 등의 계획안은 정부 산업안전 규제에 순응해야 한다.

외국 제품을 포함한 기계, 장비, 다른 생산설비, 교통수단, 기술공정, 자재 및 화학물질, 근로자 개인 및 집단 보호 장비 등은 정부 산업안전 규제에 순응해야 하며, 순응 보증서 그리고 (또는) 순응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두 번째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실효. - 연방 법 제 N 421-FZ, 2013.12.28.

생산시설 건축 및 보수 계획안의 정부 산업안전 규제 순응평가는 도시건설 활동에 관한 법에 따라 계획안 서류 심사 및 정부 건설 감시활동 이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축 또는 보수한 생산시설은 담당 분야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업무 시 독극물(위생-보건학적, 생의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자재, 생산품, 제품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새로운 또는 사업주가 이전에 사용한 적 없는 유해,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주는 이 물질 사용 전까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 및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부관리 균일측정 분야와 관련된 측정과 동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 등에 대한 규제는 측정의 균일성 보장에 관한 연방법과 기술 관리에 관한 연방법에서 규정한다.

제 216조.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 관리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 관리는 러시아 연방 행정부가 직접 이행하거나, 노동 분야의 정부시책을 수립하고 법적 관리를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이행하며, 다른 연방 행정기관들도 해당 권한 내에서 이행한다.

두 번째 부분은 실효 - 연방법 제 90-FZ호, 2006.6.3.

산업안전 분야에서 법적 관리의 별도 기능, 특별 허가, 감시, 감독 기능 등의 이행 권한이 부여된 연방 행정기관들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서로 일치되는 결정을 해야 하며, 노동 분야에서 법적 관리 기능을 가진 연방 행정기관과 각자의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연방주체의 영토 내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 관리는 연방 행정기관들과 연방주체 행정기관들이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각자의 권한 내에서 이행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 관리의 개별적 권한은 연방법과 연방주체의 법에 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이양할 수 있다.

연방 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러시아연방 행정부는 산업안전의 정부 관리를 위해 다음을 이행한다.

-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 관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을 작성한다.
-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연방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과정을 통제한다.
- 회사 책임자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훈련의 조직 및 진행, 근로자의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지식 검증 등의 절차와, 현장에서의 희생자 응급처치요령 교육훈련의 조직 및 진행, 산업안전에 대한 설명, 작업장 실습 등의 조직 및 진행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 작업환경에 대한 정부진단 이행 절차와 작업환경 특별평가 시행 절차 등을 정한다.
-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에 대해 경제적 촉진책을 마련한다.
- 산업안전 분야의 정부시책 실현을 위해 연방 행정기관, 연방주체 행정기관, 사업주 단체, 노동조합 단체 및 그 연합 등의 상호협력을 확보한다.
-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업무를 조정하고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관련 국내외 선진 업무경험을 확산시킨다.
-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관장한다.

- 러시아연방의 연방법 및 기타 법규명령에 따라 산업안전 정부 관리 분야에서의 기타 권한을 이행한다.

산업안전 분야 정부 관리를 위해 연방주체의 행정기관은 다음을 이행한다.

- 연방주체의 영토 내에서 산업안전 분야 정부시책과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연방 차원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지원한다.

- 지역 차원의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계획을 작성 및 승인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 연방주체 영토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 책임자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의 산업안전 교육훈련,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지식 검증, 현장에서 사고 희생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교육훈련 등이 시행되도록 조정한다.

- 연방주체 영토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환경 정부진단을 시행한다.

- 연방주체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주들의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 산업안전 정부 관리 분야에서 연방 행정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권한을 연방주체의 법 및 기타 법규명령에 의거 수행한다.

제 216.1조. 작업환경 정부진단

작업환경 정부진단은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연방 행정기관이 이행하고, 또한 연방 행정부가 위임한 연방 행정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방주체 행정기관이 수행한다.

작업환경 정부진단 시행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자가 작업환경 정부진단 시행을 위한 문서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작업환경 정부진단 시행 권한 기관은 작업환경 정부진단 시행과 연관된 기관 및 기구들에 동 문서와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동 문서와 자료들이 연방 법령, 연방주체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거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관들이나 기구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작업환경 정부진단은 다음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한다.

- 작업환경 특별평가 수행의 질
-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업무에 대해 제시한 보장 및 보상의 정당성
- 근로자의 실제 작업환경

작업환경 정부진단은 법원의 결정과 행정기관,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 노동조합, 노동조합단체, 기타 근로자 위임 대표기관들,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작업환경 정부진단을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러시아 연방법과 기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업주(법적-조직적 형태나 소유 형태에 무관하게 모든 회사,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진단을 위해 소정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제재 없이 방문
- 진단 수행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의 요구 및 무료 접수
- 필요 시 러시아 연방법과 기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인된 실험(측정)실을 이용하여 필요한 관찰, 측정, 계산 등을 수행

작업환경 정부진단 수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이 정부 산업안전 규제에 순응(불응)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법원과 행정기관,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 노동조합, 노동조합단체, 기타 근로자 위임 대표기관들,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기관 등에 발송한다.
- 진단결과보고서 결론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장한다.
- 진단 수행을 위해 접수한 서류 및 자료를 보존하고 포함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제 217조. 회사 내 산업안전 담당관

산업안전 규제 준수와 준수 여부 감독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생산 활동 사업주는 산업안전 담당관을 두거나, 이 분야에 적합하게 준비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산업안전 전문가를 둔다.

근로자가 50인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주는 자신의 생산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 담당관이나 산업안전 전문직을 편성할 것인지 결정한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 담당관과 산업안전 전문직이 없는 경우 동 기능은 개인사업자(개인), 회사 대표, 사업주가 위임한 다른 근로자, 사업주가 민사계약을 통해 의뢰한 산업안전 분야 용역 제공 회사나 전문가 등이 대신 수행한다.

산업안전 분야 용역 제공 회사는 필수 인증 대상이며, 작업환경 특별평가에 관한 법에 의해 그 인증절차가 규정된 작업환경 특별평가 시행 회사는 제외한다.

인증이 필요한 용역의 목록, 산업안전 분야 용역 제공 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이 포함된 인증 원칙, 인증된 회사에 대한 감독 수행 절차, 인증의 연기 또는 거부절차 등은 노동 분야 정부시책 수립과 법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정한다.

회사 내 산업안전 담당관 조직 구성과 숫자는 노동 분야 법적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업주가 결정한다.

제 218조. 산업안전위원회

사업주의 주도 그리고(또는) 근로자 또는 그 대표기구의 주도에 의해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구성원은 사업주의 대표자들과 단위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 대표기구의 선임 기구 대표자들이 동수로 구성한다.

산업안전위원회에 관한 기본 규정은 노동 분야 국가정책 수립과 법적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정한다.

산업안전위원회는 산업안전 규제 준수 보장, 업무상의 부상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공동조치를 관장하고, 작업장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통보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단체협약(합의)에 제의할 내용을 종합하는 등의 활동을 관장한다.

제 219조. 산업안전 규제 순응 환경에서의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모든 근로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산업안전 규제에 순응하는 작업장
- 연방 법률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
- 사업주, 관련 국가기관, 사회조직 등으로부터 작업장의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건강 장애 위험의 존재여부,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생산요소들로부터의 방호조치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수령
- 산업안전 규제 위반에 따라 자신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연방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업무 수행 거부
- 산업안전 규제에 따른 개인 및 집단 보호 장비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수령
-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안전한 작업방법 및 요령 교육훈련
- 산업안전 규제 위반으로 인해 작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직업교육
-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행정기관, 담당 분야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기타 행정기관, 작업환경 정부진단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노동법과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기타 법령의 준수를 감독하는 노조기구 등이 자신의 작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검사를 수행해 주도록 요구
- 러시아연방 정부기관, 연방주체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사업주, 사업주 단체, 노동조합, 노동조합단체 및 기타 근로자가 위임한 대표조직 등에 산업안전 관련 문제 제기
- 자신의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 시, 그리고 자신의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조사에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개인자격으로 참여
- 건강진단 기간 동안 직장(직책)과 평균임금을 유지하며 의사소견에 따른 임시 건

강진단 수검

-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업무 시, 이 법과 단체협약, 합의, 자체 규정, 노동계약 등에 규정된 보장 및 보상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업무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장 및 보상의 규모, 절차, 조건 등은 이 법 제 92조, 117조, 147조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한다.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업무에 따른 증가 또는 추가된 보장 및 보상은 사업주의 재정-경제 상태를 고려하여 단체협상, 자체 규정 등에 의해 결정한다.

작업환경 특별평가 결과나 작업환경 정부진단 결과에 의해 안전한 작업환경의 작업장임이 보증된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장이나 보상은 정하지 않는다.

제 220조. 산업안전 규제순응 환경에서의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보증

정부는 산업안전 규제순응 환경에서의 업무에 대한 권리 보호를 근로자에게 보증한다.

노동계약에 규정된 작업환경은 산업안전 규제에 순응해야 한다.

행정업무 지체로 인한 업무지연이나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산업안전 규제 위반으로 인해 연방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등에는 근로자는 직장(직책)과 평균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수행한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다른 직책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나, 이전 직책에서의 평균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한다면(이 법과 기타 연방법에 정한 경우는 제외) 사업주는 그 위험이 제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주어야 한다.

만약 객관적 이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해 이 법과 다른

연방법 등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해진 기준으로 개인 및 집단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 의무 수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안전 규제 위반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를 징계처분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이행하던 중 생명이나 건강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이 법에 따른다.

산업안전 정부규제 위반의 예방 및 배제를 위해 정부는 규제 준수에 대한 연방 정부 감시를 관장하고 그 수행을 보장하며, 동 규제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책임자의 책임을 정한다.

제 221조. 근로자의 개인 보호 장비 지원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 특수 온도 조건이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업무 시 근로자는 러시아 연방 행정부가 정한 절차에 제시된 기본 규정에 따라 필수 인증과 적합성 보증을 거친 특수 의복과 특수 신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그리고 세척 및 중화장비 등을 무료로 지급받는다.

사업주는 단위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자 대표기구의 선임기구 등의 견해와 자신의 재정-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요소들과 특수 온도조건이나 오염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기본 규정과 비교 시 더 개선된 특수 의복, 특수 신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의 무료지급 기준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특수 의복, 특수 신발, 기타 개인 방호 장비의 적시 지급과 그 보존, 세척, 건조, 수리, 교체 등을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222조. 우유 및 치료-예방 식품 지급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업무 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우유나 그와 동일 가격의 식품이 지급된다. 만약 단체계약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제

공되는 우유나 그와 동일한 가격의 식품은, 근로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우유 가격이나 그와 동일 가격의 식품 가격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업무 시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 치료-예방적 식품을 무료 제공한다.

이 조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규정한 우유나 그와 동일 가격의 식품과 치료-예방적 식품 등의 무료 지급 기준과 조건, 현금보상 지급절차 등은 러시아연방 행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회-노동관계 관리를 위한 노사정 3자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정한다.

제 223조. 근로자에 대한 위생-생활 서비스 및 의료 보장

산업안전 규제에 따른 근로자의 위생-생활 서비스 및 의료 보장은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 이를 위해,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생-생활공간, 식사 공간, 의료지원 공간, 업무 중 휴게 및 정신적 부담 해소 공간 등을 갖춘다.
- 응급처치용 약품이 구비된 응급처치장소를 체계적으로 설치한다.
- 근로자를 위한 휴게주방(탕비실)과 탄산식염수 저장실 및 기타 등을 설치한다.
-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의 경우 또는 의료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거주지로 근로자를 이송할 때에는 사업주의 교통수단이나 그의 비용부담에 의한다.

제 224조. 특정 범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추가 보장

이 법과 러시아연방의 다른 연방법 및 기타 법규명령에 정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근로자를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업무하게 하거나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시킬 경우, 특정 범주 근로자를 위해 규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한다.
- 건강상태로 인해 보다 용이한 업무에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근로자는, 연방법과 기타 러시아연방 법규명령에 정한 절차에 의해 발급된 의사 소견서에 따라, 응분의

임금과 함께 다른 업무로 이동 조치한다.

- 휴식을 위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휴게시간을 정한다.
- 개인 재활 프로그램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기타 조치를 이행한다.

제 225조. 산업안전 분야 교육훈련

회사 책임자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러시아 연방 행정부가 위임한 연방행정기관이 사회-노동관계 관리를 위한 러시아 노사정 3자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훈련과 산업안전 규제 인지 여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사업주나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신규 채용되거나 직장 이동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반드시 산업안전에 대한 설명회를 시행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및 요령과 사고 희생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교육해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한 그리고(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업무에 사용되는 근로자에게 작업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작업수행의 안전한 방법과 요령을 교육훈련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업무 기간 중 산업안전에 대한 주기적 교육훈련과 산업안전 규제 인지 여부 검증을 시행한다.

정부는 교육기관에서의 산업안전 교육훈련을 공동 관장한다.

정부는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제 226조.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위한 재정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위한 재정은 러시아연방의 연방법과 기타 법규 명령, 연방주체의 법과 법규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방 예산, 연방주체 예산, 지역 예산, 예산 외 자원 등으로 충당한다.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위한 재정은 또한 회사나 개인의 자발적 성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

사업주(국가 독점기업 및 연방 기관은 제외)에 의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위한 재정 총당금은 상품(노동, 용역) 생산 비용 총액의 0.2% 보다 작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위험수준 저하를 위해 상기 재원으로 사업주들에 의해 시행되는 연간 활동의 표준 목록은 노동 분야 정부시책 수립 및 법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이 정한다.

러시아 연방법과 기타 법규명령, 연방주체의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경제 제 분야, 연방주체, 지역 그리고 사업주는 산업안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위한 재정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227조. 조사 및 집계에 해당되는 재해

근로 의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주(그의 대리인)의 위임에 의해 여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 따라 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행된 여하한 합법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생산 활동에 참여했던 근로자와 다른 자들(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포함)에게 발생한 재해들은 이 장에 의거 조사 및 집계된다.

사업주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 자에는, 노동계약에 의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 근로자 외에 다음이 포함된다.

- 교육계약에 의거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 및 기타의 자
- 업무 실습을 받고 있는 교육생
- 의료 권고에 의거 업무 요법 절차대로 치료-생산 기업에서 업무에 참여하며 정신 장애를 겪는 자
- 징역선고를 받고 노동에 사용된 자
- 지정된 사회봉사 수행 절차에 의거 사용된 자
- 개인적 노동참여를 수용한 생산자 협동조합과 농장의 구성원

사고 희생자가 다음의 상해를 입은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된다.

- 타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 신체 상해(부상)

- 열사병

- 화상

- 동창

- 익수

- 감전, 번개, 방사능 노출

- 동물과 곤충에게 물리거나 외상을 입은 경우

- 폭발, 교통사고, 건물과 시설 및 축조물 등의 붕괴, 자연재해 그리고 기타 비상적 상황의 여파에 따른 부상과 기타 외부요소의 작용에 따른 건강장해 등으로 인해 사고 희생자의 직장 이동의 필요성이 야기되거나 한시 또는 영구 장애, 사망 등을 초래한 사고가 다음의 시간에 발생했을 때

- 사업주의 영역 또는 다른 업무수행 장소에서, 규정된 휴게시간, 업무 시작 전 및 종료 후 생산도구와 의복 정리에 필요한 시간, 내부 근로절차에 따른 기타 행위에 필요한 시간,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무, 휴일 및 비근무 경축일 등의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업무시간

- 업무수행 장소로 이동하거나 또는 업무수행 장소로부터 이동하면서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또는 사업주의 지시나 노동계약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업무 목적으로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 업무 출장 장소 왕복을 위해 대중교통이나 업무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 또한 사업주(그의 대리인)의 지시로 업무 수행(위임) 장소를 도보 포함하여 왕복하는 경우

- 교대 중간 휴게시간에 교대자의 자격으로 교통수단에 탑승해 있는 경우(교통수단 교대 운전자, 열차 객실 승무원이나 냉방기계실 기술자, 열차 우편차량대원 및

기타)

- 교대제 업무에서 교대 사이의 휴게시간, 또한 교대근무와 탑승업무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에 탑승상태에 있는 경우(항공기, 해양 선박, 강상 선박)
-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 따르거나 그의 이익을 위해, 대형 참사나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 여타 합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만약 이 조의 세 번째 부분에 명시된 사고가 대형 참사, 교통사고 또는 여타 비상적 상황을 예방하는 업무나 그 여파를 제거하는 업무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했다면 이 사고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제 228조. 재해 시 사업주의 의무

이 법 제 227조에 명시된 재해의 발생 시 사업주(그의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사고 희생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사고나 기타 비상적 상황의 확산을 방지하고 상해요소가 타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만약 상황이 다른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대형 참사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며, 여타 비상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해 사고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고발생 순간이 어떠했는지 그 상황을 보존하며, 보존이 어려운 때에는 - 발생된 상황을 기록(약도 작성,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기타 다른 조치)한다.
- 이 법과 러시아연방의 다른 연방법 및 기타 법규명령에 명시된 기관 및 조직에 재해 정보를 즉각 통보하며, 중대재해 또는 사망 재해는 - 사고 희생자의 친족에게도 통보한다.
- 적절한 적시 재해조사의 관장 및 지원과 이 장에 따른 조사 자료 작성에 필요한 여타 조치를 시행한다.

제 228.1조 재해 통보절차

집단 재해(2인 및 그 이상),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의 경우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1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으로 아래 기관들에 정보를 발송해야한다.

-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감시 수행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의 해당 지방관서
- 재해 발생지역의 검찰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국가등록을 한 지역의 연방주체의 행정관서 그리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서
-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
- 담당 분야에서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조직이나 대상물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지역 관서
-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 보험자의 실무부서(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등록된 지역)

집단재해,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 시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해당 지역 노동조합연맹에도 1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으로 정보를 발송해야한다.

선박(그 소속 기관(분야)에 무관하게)의 항해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 선장은 지체 없이 사업주(선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선박이 국경선 밖에서 항해 중일 때는 해당 러시아연방 영사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사업주(선주)는 선박에서 발생한 집단재해,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 통보를 접수 시 1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으로 아래 기관들에 정보를 발송해야한다.

-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감시 수행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의 해당 지방관서
- 선박 등록 지역 해당 검찰
- 만약 재해가 선박의 원자력 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거나 핵물질, 방사성 물질과 폐기물 등의 운송 중 발생하면, 원자력 에너지 이용분야의 연방정부 감시업무와 방사성 안전 분야의 감시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해당 연방 행정관서

- 해당 지역 노동조합연맹

-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 보험자의 실무부서(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등록된 지역)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의 범주로 악화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그에 대한 정보 접수 후 3일 이내에,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감시 수행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의 해당 지방관서, 노동조합 지역 연맹, 그리고 담당 분야에서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조직이나 대상물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지역 관서, 보험사고 시에는 - 보험자의 실무부서(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등록된 지역) 등에 지정된 양식으로 정보를 발송한다.

급성 중독의 경우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연방정부의 위생-역학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의 해당 관서에 통보한다.

제 229조. 재해조사위원회 구성 절차

재해 조사를 위해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지체 없이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산업안전 전문가 또는 사업주의 명령(지시)에 의거 산업안전 업무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자, 사업주의 대리인, 단위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자 대표기구의 산업안전 관련 선임기구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되나,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 담당 분야의 정부감독(감시)을 수행하는 해당 연방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1인 또는 다수의 사고 희생자가 건강에 중대한 장해를 입은 재해(집단재해 포함)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집단재해 포함)일 때에는 위원회 구성에 정부 근로감독관, 연방주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합의에 따라) 대표자, 노동조합 지역연맹 대표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 보험자(사업주가 보험가입자 자격으로 등록된 지역의) 실무담당 부서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연방정부 감시 수행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된다.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주의 명령(지시)에 의해 확정된다. 재해가 발생한 구역(대상물)의 산업안전 규제 준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는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인 사업주에 대한 재해조사에는 동 사업주나 그의 전권 대리인과 희생자의 대리인, 재해조사에 투입될 수 있는 계약 기반의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업무를 위해 다른 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 자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는 재해가 발생한 당해 사업주가 구성한 위원회가 조사한다.

동 위원회에는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의 대리인도 포함된다. 동 대리인의 불참이나 지각은 조사기간 변경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른 사업주의 영역에서 업무하던 자와 관련된 재해는 업무 수행을 위임했던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구성한 위원회가 조사하며, 필요 시 동 영역의 소유권, 임대권, 사용권(임차 포함) 및 기타 근거를 가지는 사업주(그의 대리인)의 참여 하에 조사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할된 다른 사업주의 구역에서 사업주(그의 대리인)의 위임에 의거 작업한 자의 사고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구역의 사업주의 대리인이 필히 참가한 가운데 이 작업을 진행한 사업주가 구성한 위원회가 조사한다.

부업으로 업무 수행 중이던 근로자의 재해는 부업 업무 장소에서 조사되고 집계된다. 이 경우 조사를 수행한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하에 조사결과를 사고 희생자의 본업 사업주에게 알린다.

대형 참사나 사고 및 기타 교통수단의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위원장이 되어 구성한 위원회가 조사하되, 담당 분야의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해당 연방 행정기관,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교통수단 소유자 등이 수행한 대형 참사, 사고 또는 기타 수송수단의 훼손에 대한 조사의 결과자료를 필히 사용하여 조사한다.

모든 사고 희생자, 그리고 그의 법정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은 희생자가 연관된 사고의 조사에 개인적으로 임할 권리를 가진다.

희생자의 요구나 또는 희생자 사망 시에는 희생자의 부양가족 또는 그와 가까운 친척의 요구에 의해 그들의 법정 대리인이나 기타 대리인도 재해조사에 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나 기타 대리인이 재해조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그의 대리인) 또는 위원장은 법정 대리인이나 기타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조사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물에서 핵, 방사능 및 기술적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중 규제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위원회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 분야의 연방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의 지역관서 대표자를 또한 포함한다.

시설안전 분야 감독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 지역관서의 감독을 받는 조직이나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 위원회 구성은 해당 지역관서의 장이 확정한다. 위원장은 이 관서의 장이 된다.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집단재해의 경우 위원회는 노동법과 기타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 준수에 대한 연방정부 감독(감시) 수행을 위임받은 연방행정기관의 대표자와 전러시아 노동조합연맹 대표자들도 포함한다. 위원장은 정부근로감독관청의 장 - 즉, 해당 정부근로감독관청의 총근로감독관 또는 그의 산업안전 담당 부책임자가 되며, 시설안전 분야의 정부 감독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지역관서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나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 이 지역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229.1조. 재해조사 기간

1인 또는 수 명의 사고 희생자가 건강에 가벼운 장애를 입은 사고(집단사고 포함)의 조사는 위원회가 3일 간 실시한다.

1인 또는 수 명의 사고 희생자가 건강에 중대한 장애를 입은 사고 또는 사망사고(집단사고 포함)의 조사는 위원회가 15일 간 실시한다.

사업주에게 적시에 통보되지 않거나 사고 결과로 인한 희생자의 장애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사고는 사고 희생자나 그의 대리인의 요구에 의해 이 법과 러시아연방의 다른 연방법 및 기타 법규명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간 조사한다.

재해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진행, 해당 의료 또는 기타의 보고서 접수 등이 필요한 경우, 이 조에 명시한 기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며, 단, 15일을 넘지 못한다.

만약 재해조사가 진단 수행기관이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의 사고 상황 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재해조사 기간 연장은 동 기구 및 기관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결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229.2조. 업무상의 재해 조사 수행절차

각각의 재해에 대한 조사 시 위원회(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 정부 근로감독관)는 사고 목격자나 산업안전 규제를 위반한 자를 출석시켜 심문하며, 사업주(그의 대리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거나, 가능할 경우 사고 희생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다음을 지원한다.

- 기술적 계산의 수행, 실험실에서의 실험, 시험 및 다른 실험적 작업 수행, 동 목적을 위한 전문가 투입
- 사고 장소 및 훼손된 시설물의 사진 그리고(또는) 비디오 촬영, 청사진, 스케치, 약도 등 작성
- 수송수단, 사무실, 통신수단, 특수 의복, 특수 신발 및 다른 개인 보호 장비 제공

재해조사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재해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령(지시)
- 청사진, 스케치, 약도, 발생장소 관찰 절차, 필요 시 사진과 영상자료
- 작업장 상태, 업무상 유해 및 위험요인의 존재여부 등을 특정하는 서류
- 산업안전 설명회 등록부 및 사고 희생자들의 산업안전 규제 인지 여부 검증 기록부 등의 사본
- 재해 목격자와 책임자의 증언 기록철 및 사고 희생자의 진술
- 전문가의 전문적 결과보고서, 기술적 계산과 실험실 시험 및 실험의 결과물
- 사고 희생자의 건강에 미친 손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손상의 특성과 수준, 그리고 재해 순간의 사고 희생자의 음주, 마약 또는 기타 독극물 흡입 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서

- 현행 기준에 따르는 특수 의복, 특수 신발 및 다른 개인 보호 장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정부 근로감독관, 그리고 담당 분야에서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의 지역관서의 책임자(사고가 이 관서의 통제를 받는 조직 및 시설에서 발생했을 경우)가 이전에 사업주에게 발급한 조사 항목 연관 시행지시서의 사본, 또한 노출된 산업안전 규제 위반 제거에 관한 노동조합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서 사본

- 위원회에서 검토할 기타 서류

- 사고조사를 위한 구체적 자료들의 목록은 위원장이 재해 상황과 특성을 감안해 결정한다.

수집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위원회(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 정부 근로감독관)는 재해 상황과 원인, 그리고 산업안전 규제를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판명된 위반 및 사고 원인 제거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을 작성하며, 재해 당시 사고 희생자가 사업주 또는 그의 생산 활동 참여자와의 노동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정하고, 필요시에는 어느 사업주가 사고 집계를 기록해야 하는지 결정하며,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인지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무관한 사고인지를 판정한다.

다음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되며, 동 사항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위원회(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 정부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 또는 무관한 사고로 판정할 수 있다.

- 해당 병원이나 조사기관 또는 법원 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 질병이나 자살에 의한 것으로 확정한 사망

- 산업 알콜, 아로마, 마약 그리고 여타 독극물을 사용하는 기술과정의 규제위반과는 무관하고, 의료기관의 소견서에 의해 사고 희생자의 알콜, 마약, 독극물 흡입이 유일한 원인으로 확인된 사망 또는 건강장해

- 사법 당국에 의해 형사 처벌대상으로 판정된 행위(무행위)를 사고 희생자가 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재해

만약 재해가 피보험자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기타의 자와 관련해 발생했다면 동 업무상의 재해는 보험사고가 된다.

피보험자와 관련된 재해의 조사에서 피보험자의 주의태만이 자신의 건강장해의 발생과 확대에 함께 작용했다고 규정되면, 단위노동조합의 선임기구 또는 기타 근로자 위임기관의 결론을 고려하여 위원회(이 법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 정부 근로감독관)가 보험 가입자의 책임 정도를 백분율로 규정한다.

9번째 부분은 실효 - 연방법 제 167호, 2009.7.17.

특정 분야나 조직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조사 특성에 관한 규정과 재해조사에 필요한 서류 양식 등은 러시아 연방 행정부가 위임한 연방 행정기관이 정한다.

제 229.3조. 정부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이행

정부 근로감독관은 은폐재해 식별, 사고 희생자 (그의 법정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 또는 사고 결과로 인한 사망자의 부양가족이나 그와 가까운 친척(그들의 법정 대리인이나 기타 대리인) 등이 소원, 청원, 여타 요청을 제기한 경우나, 사고 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그들의 부동의의 경우, 그리고 조사절차 위반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정보를 접수했을 경우 등에 사고 후 경과시간에 무관하게 이 장의 규제에 따라 추가 사고조사를 진행한다.

추가 사고조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근로감독관의 참여 하에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 담당 분야에서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해당 연방 행정기관의 장과 보험자의 실무부서(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등록된 지역)의 참여 하에 진행한다.

정부 근로감독관은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이행지시서를 발부한다.

정부 근로감독관은 기존 규정이 위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해조사 결과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주(그의 대리인)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수립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기존 업무상의 재해 규정은 사업주(그의 대리인)나 정부 근로감독관의 결정을 근거로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 230조. 업무상의 재해 조사자료 작성절차

조사 결과 업무상의 재해로 판정되고, 러시아 연방의 연방법과 기타 법규명령에 정한 절차대로 발부된 의사 소견서에 의거 사고 희생자를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하거나, 하루 이상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고 희생자의 사망을 초래한 각각의 재해에

대해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재해조사표 2부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작성하는데, 러시아어로 또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작성한다.

집단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 희생자 별로 각각 작성한다.

피보험자와 관련된 업무상의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1부를 추가로 작성한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고 상황과 원인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산업안전 규제 위반자를 명시해야한다.

건강장해의 발생 및 확산에 피보험자의 주의태만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규정되면 업무상의 재해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피보험자의 책임 정도를 백분율로 문서에 표시한다.

조사를 종결한 후 모든 조사 참가자가 산업재해조사표에 서명하며,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확인하고 도장으로 인증한다(도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업무상의 재해의 조사 종결 3일 이내에 자신이 확인한 산업재해조사표 1부를 사고 희생자(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여타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사망자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인 경우에는 - 사망자의 부양가족이나 그와 가까운 친척(그들의 법정 대리인이나 여타 대리인)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전달한다. 동 문서의 두 번째 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 업무상의 재해를 집계하는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재해조사 자료와 함께 45년간 보관한다.

보험사고인 경우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문서의 세 번째 본과 조사 자료를 업무상의 재해 조사 종결 후 3일 이내에 보험자(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등록된 지역) 실무부서에 발송해야 한다.

다른 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의 업무에 참여한 자와 연관된 업무상의 재해의 경우 (이 법 제 229조 다섯 번째 부분) 사고 발생 당해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산업재해조사표 사본과 조사자료 사본을 사고 희생자의 본 작업장(교육, 근무)으로 보낸다.

위원회(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 정부 근로감독관)는 집단재해와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 등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고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해당 사고 조사에 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2부 작성하고, 모든 조사 참가자들이 이

에 서명한다.

업무상의 재해 조사 결과는 업무상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수용하기 위해 단위 노동조합 선임기관의 참석 하에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검토한다.

제 230.1조. 업무상의 재해의 기록 및 집계 절차

정해진 절차에 의거 문서로 작성된 각각의 업무상의 재해는 위원회(이 법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 정부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의거 집계를 수행하는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업무상의 재해 등록부에 정해진 양식으로 등록한다.

'집단 업무상의 재해, 중대 업무상의 재해, 사망 업무상의 재해 등에 관한 산업재해 조사표' 1부는 조사 자료의 사본 및 사고 희생자 각각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장(이 법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 정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제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음 사고에 대해 통보했던 검찰에 발송한다.

동 문서의 두 번째 본은 당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가 조사 자료와 함께 45년간 보존한다.

동 문서의 사본은 조사 자료 사본과 함께 아래 대상에게 발송한다.

해당 정부 노동검사관, 담당 분야에서 정부 감독(감시)를 수행하는 해당 연방 행정기관 지역관서 - 사고가 이 관서의 통제를 받는 조직 및 시설에서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고인 경우에는 - 또한 보험자(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등록된 지역) 업무부서.

1인 또는 다수의 사고 희생자들이 건강상 중대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업무상의 재해(집단재해 포함) 등의 산업재해조사표(집단재해 포함)의 사본들은 각각의 재해 희생자들의 산업재해조사표와 함께, 러시아연방에서 업무상의 상해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작성하기 위해, 위원장(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 정부 근로감독관)이 노동법과 기타 러시아연방의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 준수에 대한 연방정부 감시 수행의 전권을 가진 연방 행정기관, 해당 노조 지역연맹 등에 발송한다.

사고 희생자가 한시장해 기간을 종료하면 사업주(그의 대리인)는 업무상의 재해 후 유증과 업무상의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해당 정부 근로감독관에게, 그리고 필요시에는 - 담당 분야에서 정부 감독(감시)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기관의 지역관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발송해야 한다.

제 231조. 업무상의 재해 조사, 작성 및 집계에 대한 이견 검토

재해의 조사, 작성, 집계에 관한 이견, 재해의 사실에 대한 사업주(그의 대리인)의 불인정, 재해조사 진행 및 관련 문건 작성 거부, 사고 희생자(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여타 대리인) 및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 - 재해의 결과로 인한 사망자의 부양가족이나 그와 가까운 친척(그들의 법정 대리인이나 여타 대리인)들의 부동의 등은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과 함께, 노동법과 기타 러시아연방의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법령 준수에 대한 연방정부 감시 수행의 전권을 가진 연방 행정기관과 그 지방관서에 의해 검토되며, 동 기관의 결정은 법원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의 제기는 사업주(그의 대리인)가 정부 근로감독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